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5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박희승·김정호·김준혁

주철현 · 김윤덕 · 박민규

윤준병 • 민병덕 • 임광현

민형배 • 위성락 • 이광희

최민희 · 안호영 · 김영환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 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공직선 거 당선의 유·무효를 재판하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 형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양형에 대한 판사 개인 간의 편차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무엇보다 형사재판에 있어 판사의 양형은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판사에게 당선 무효여부에 대한 부담 을 주고 있으며, 당선무효 여부에 대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게 함으 로써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사례가 많이 있음. 나아가 다른 선진국가들의 경우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두어 당선무효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 결정하는 사례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범죄의 벌금형 금액과의 균형이 맞지않는 등 벌금형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피선거권 결격사유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금액을 현실화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8조 제1항제3호, 안 제264조 등).
- 나.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의 최저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 230조제6항 등).
- 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 1년에 상응하는 벌금

형 금액을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30조제7항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100萬원이상의"를 "1천만원 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4호가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萬원이상 7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로 한다.

제2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萬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萬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로 한다.

제235조제1항 중 "1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千萬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를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400萬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42조의2제1항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45조제2항 중 "600萬원이하의"를 "3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246조제2항 중 "200萬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48조제1항 중 "1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52조제1항 중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600

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400萬원이하의"를 "2 천만원 이하의"로 한다.

제253조 중 "6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54조제1항 중 "6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0萬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천만원"을 "5천 만원"으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0萬원"을 "2천만원"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0萬원"을 "2천만원"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萬원"을 "1천만원"으로 한 다.

제2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千萬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59조 중 "600萬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63조제1항 본문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전단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64조 중 "100萬원이상의"를 "1천만원 이상의"로 한다.

제265조 본문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萬원이상의"를 "1천만원 이상 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	
권이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	3
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	
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	
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	
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	
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	
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	<u> 1천만원 이상의</u>
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	

年	모	는	开	·네의	幸	衍	猶到	象♀	4	宣
告	를	받	卫	コ	刑	(٥	확?	정두	틴	후
104	年;	흐	경	과히	하지	C	トレ	하	거	나
懲征	安尹	刊으]	宣誓	i를	Ą	보고	_	1	執
行	을	받	기	아-1	니ㅎ	ト기	로	확	정	된
후	또	는	コ	- 刑]의	幸	行)	종	료
되?	거ι	+	免	除モ] 3	<u>5</u>	10£	ΕĘ	<u>)</u>	경
과	하기	۲]	아	니현	<u>}</u>	者(刑c		失	效
된	者	도	포	함	한디	-				

4. (생략)

②・③ (생 략)

-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 月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 1. ~ 3. (생략)
 -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u>500만원</u> 이상의 벌금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 다.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u>.</u>
1. ~ 3. (현행과 같음)
4
가. <u>1천만원</u>
나.・다.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천만원-----처한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政黨・候補者(候補者가 되 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ユ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 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 者・演説員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 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 있는 會社 등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7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 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 ・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 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만원-----.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 (4) -----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期

間중 포장된 膳物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選擧人에게 배부하 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金品을 운반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⑤ (생략)
-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u>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別 利害誘導罪)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5천만원

· ⑤ (현행과 같음)
6
<u> </u>
ا جا تا ۱۵ ما ۱۸ جا تا ۱۵
<u>1천만원 이상 5천만원</u>
이하의
⑦
<u>3</u>
천만원
1. ~ 3. (현행과 같음)
8
5처마의
<u>5천만원</u>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
收 및 利害誘導罪)①
1 <u>천</u>

<u>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u> 벌 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② 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u>500萬원</u> 이 <u>상 7천만원 이하의</u> 罰金에 處 하다.
-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u>500萬원 이상 5천만</u>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2. (생략)
 - ②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 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 의 懲役 또는 <u>500萬원 이상 7</u> 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생 략)
-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 ① 第97條 (放送・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第1項・第3

<u>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u>
 1. ~ 3. (현행과 같음) ②
<u>1천만원 이 성 1억원 이하의</u>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u>1천만원 이상 7천면</u> 원 이하의 1.·2. (현행과 같음) ②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 ①

項의	芨	見定에	위반	한	者는	5年
이하	의	懲役	또는	1	千萬원	<u> </u>
하의	罰	金에	處むロ	구 .		

- ② 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 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 選擧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 年 이하의 懲役 또는 <u>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u> 罰金에 處한다.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u> <u>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 ⑥ (생략)
-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 자유방해죄 등) ① (생 략)
 -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5천만원	 [
②	
<u>7천만원</u> 9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
<u>1천년</u> 이상 1억원 이하의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천만원	<u>5</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	선거
자유방해죄 등) ① (현행과 음)	
②	<u>1</u>

1. ~ 5. (생략)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壁報・ 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設置를 방 해하거나 이를 훼손·撤去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u>40</u> <u>0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

1. ~ 5. (현행과 같음)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2천만원
· ②
3천만원
(3)

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지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그 투표하고자하는 정당이나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질문하거나투표마감시각 전에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 지 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3천만원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
3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
무 간섭죄) ①
· · · ·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 원, 공정선거지원단원 ·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 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 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 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 를 騷擾 • 교란하거나, 投票用紙 · 投票紙 · 投票補助用具 · 電算 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u>3천</u>
만원
②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와 관련한	시설 • 4	설비・정	}비.
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
(거소 · 선성) 투표신]고인명	부를
포함한다)를	은닉	· 손괴 ·	훼손
또는 탈취한	<u></u> 者는	1年이	상 10
年이하의 懲	※役 또는	三 500萬	[원이
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			

- ②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 帶罪) ① (생 략)
 - ②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u>600萬</u>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③ (생 략)
- 第246條(多數人의 選舉妨害罪) ①(생 략)
 - ② 第243條 내지 第245條에 規

1천만원
의상 1억원 이하의
<u> </u>
· ②
<u>1억원</u>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
帶罪) ① (현행과 같음)
②
3천만원 이
하의
 ③ (현행과 같음)
第246條(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
(현행과 같음)
②

定된 행위를 할 目的으로 集合한 多數人이 관계公務員으로부터 3回 이상의 解散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散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主導的 行為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偽)의 방법으로 선거 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 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 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 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 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 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u>1천만원</u>
<u>.</u>
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u>3천</u>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원
②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	2
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	
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에 관	
계있는 者가 選擧人名簿에 故	
意로 選擧權者를 기재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 이	
하의 懲役 또는 <u>1千萬원</u> 이하	<u>5천만원</u>
의 罰金에 處한다.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姓名을	第248條(詐偽投票罪) ①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를 偽造	
• 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	
고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u>1千萬원</u> 이하의 罰金에	<u>5천만원</u>
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죄) ①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u>	1천
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00만원</u>

- <u>이상 2천만원 이하의</u> 벌금에 처한다.
- ③ 제82조의7제5항·제94조· 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 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600만원</u>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 說)第12項[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4項, 第73 條(經歷放送)第4項, 第74條(放 送施設主管經歷放送)第2項, 第8 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 談・討論會)第8項, 第82條(言論 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 討論會)제4항, 第137條의2(政綱 ・政策의 放送演説의 제한)第6 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 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 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 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u>이상 5천만원 이하의</u>
③
3천만원
4
2천만
<u>원 이하의</u>

第253條(姓名 등의 虛偽表示罪)	第253條(姓名 등의 虛僞表示罪)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	
하는 姓名・명칭 또는 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이나 電報 또	
는 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	
에 의한 通信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u>600萬원</u> 이	<u>3천만원</u>
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4條(選擧運動期間違反罪) ①	第254條(選擧運動期間違反罪) ①
選擧日에 投票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	
고 선거운동을 한 者는 3年 이	
하의 懲役 또는 <u>600萬원</u> 이하	<u>3천만원</u>
의 罰金에 處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②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	
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	
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	
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	
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400만원</u>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20.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 8. (생략)
- ③ (생 략)
-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 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 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u>3천</u> 만원
 1. ~ 20. (현행과 같음) ②
(a)
2천만원
· 1.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1천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6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 제82소의8제1앙을 위반한	(2)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u>5천만원</u> 이하의	<u>7천만원</u>
벌금에 처한다.	,
⑥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6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6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u>3천만원</u>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500</u>	<u>2천만</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원</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u>400萬원</u> 이하의 罰金	2천만원
에 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	4

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하게 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1. ~ 10.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 役 또는 <u>200萬원</u>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 12. (생략)
-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第違反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 役 또는 <u>1千萬원</u>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2. (생략)
 - ② 第81條第6項・第82條第4項・第113條・第114條第1項 또는第11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政 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 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

<u>2천만원</u>
,
1. ~ 10. (현행과 같음)
5
<u>1천만원</u>
1. ~ 12. (현행과 같음)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u>5천만원</u>
<u>.</u>
1. • 2. (현행과 같음)
②

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 지방의 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候 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 후보 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 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選擧 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 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對談 ・討論者, 候補者 또는 ユ 家族 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三者[第116條(寄 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規定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 다]에게 寄附를 指示・勸誘・ 알선 ·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 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 호 ·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③ 第117條(寄附받는 행위 등 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處한다.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u>3천만원</u>
③
<u>3천</u>
<u>만원</u>

④ (생 략)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 金에 處한다. 1. (생 략)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 演說・ 壁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 으로든지 第230條(買收 및 利

壁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 으로든지 第230條(買收 및 利 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 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 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 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煽動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제122조(선 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 에 의하여 公告된 選擧費用制 限額의 200分의 1이상을 超過 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 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 형 또는 <u>300만원</u> 이상의 벌금

④ (현행과 같음)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
①
<u>5천만원</u>
1. (현행과 같음)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
<u>3천만원</u>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1청만원

형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 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 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 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 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 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 第 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 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 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金刑 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

②	
<u>1천만원</u>	
·	
第264條(當選人의 選舉犯罪로	
한 當選無效)	
4 7 1 - 1 0 1 1 1 1	
<u>1천만원 이상의</u>	

선은 無效로 한다.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 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 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 · 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 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 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 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 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 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 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 자에 대하여는 선임 · 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 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 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
罪로 인한 當選無效)
<u>1천만원</u>

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 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 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 任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 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 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 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 치자금법 | 제49조의 죄를 범 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 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 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 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 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

		•	
	 		. — — — — — —
266	學犯罪	로 인한	 公務擔
	제한)		
	 	1천만원	이상의
	 	<u> </u>	

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 5. (생략)

②・③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